

2020년도 4/4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

2021. 2.

감사위원회

성과감사

감 사 보 고 서

- 승강설비 안전관리실태 -

2020. 11.

감 사 원

I. 감사실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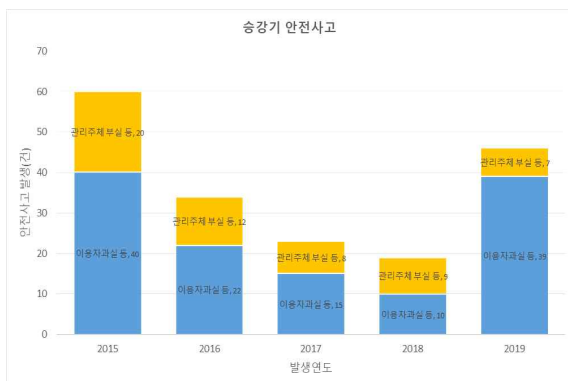
1. 감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고층건물의 증가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의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으로 전국에 매년 약 2만~4만 대의 승강기(엘리베이터 등)가 새로 설치되고 있다.

그리고 도심지의 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강기와 유사한 형식으로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최근 연도별 설치기수는 감소 추세이나 대부분이 공간 활용에 유리한 중형주차장으로 설치되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승강기 및 기계식주차장(이하 “승강설비”라 한다)의 설치 증가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에서 관련 법령·기준을 개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부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표 1] 승강설비 안전사고 현황



<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



<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현황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승강설비에 대한 검사기관의 안전검사의 적정성,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안전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승강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도표 2]와 같이 승강설비 안전검사, 운행·유지관리 및 사고조사·안전기준 등으로 감사분야를 나누고 분야별 주요 감사항목 및 중점을 대상으로 점검하였다.

승강기는 안전검사·유지관리의 적정성, 불법운행 승강기 현장점검 및 관련 제도·안전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 하였고, 기계식주차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의 적정성 및 예방을 위한 제도·안전기준의 적정성 등을 집중점검하였다.

[도표 2] 승강설비 관련 주요 감사항목 및 중점

분야	주요 감사항목 및 중점
안전검사	(1)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실시 적정성 (2) 승강기 관리주체(유지관리업체)의 자체점검 적정성 (3) 정기검사 시 조건부합격 판정 후 사후관리 적정성 (4) 검사합격증명서의 검사 유효기간 표시 적정성 등
운행 및 유지관리	(1)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불법운행 승강기 운행 여부 확인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적정성 (3)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보수업자 등록·운영 적정성 (4) 기계식주차장의 중량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주차 제한제도 적정성 등
사고조사 및 안전기준	(1) 승강기 관련 중대한 고장의 범위 적정성 (2) 승강기 제어반 에러코드 임의삭제 방지방안 적정성 (3) 승강기 균형체인 추락 방지대책 적정성 (4)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주차차량 추락 방지대책 적정성 등

3.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

가.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승강설비 관련 언론보도, 관련 법령·안전기준, 각종 사고조사보고서, 승강설비 정보망(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및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기록·저장된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검토·분석하였다.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분석 후 승강설비가 설치·운영 중인 현장을 점검하여 추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승강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감사방향과 중점, 세부 점검목록 등을 구체화한 후 2020. 5. 28.부터 6. 24.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1명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하였다.

나.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2020. 6. 23.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개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0. 11. 13. 감사위원회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¹⁾

< 범 례 >

이하 다음의 약칭을 사용한다.²⁾

[기관명]

- 행정안전부: 행안부
- 국토교통부: 국토부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법령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법

[용어]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승강기정보망

1. 승강기 일반 현황

가. 승강기의 개념

승강기는 승강기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은 제외)를 말한다.

승강기는 구조에 따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으로 구분되고, 용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승객용, 화물용, 장애인용 등으로 구분된다.

[표 1] 승강기 용도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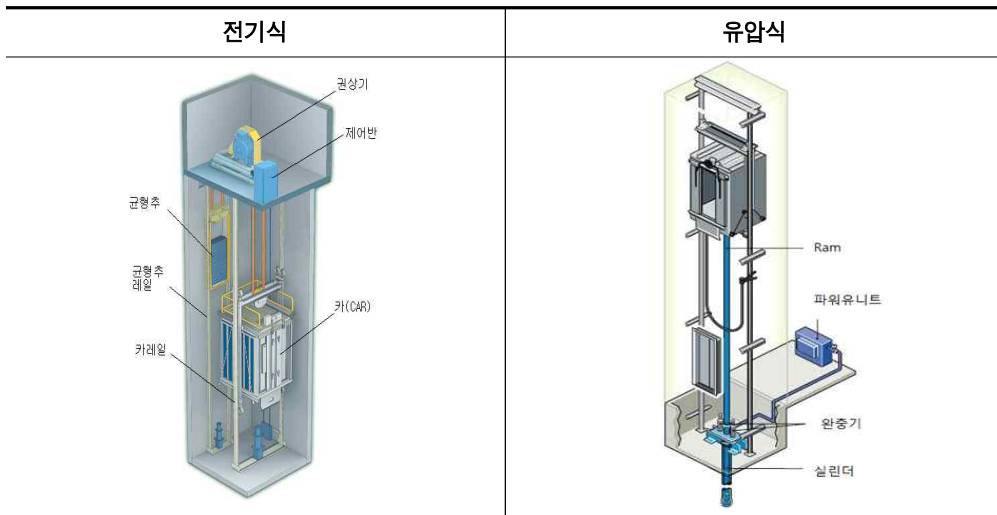
구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용도별 종류	1) 승객용 3) 병원용 5) 소방구조용 7) 주택용 9) 화물용 11) 소형화물용(Dumbwaiter)	2) 전망용 4) 장애인용 6) 피난용 8) 승객화물용 10) 자동차용	1) 승객용 2) 장애인용 3) 승객화물용 4) 승객용 무빙워크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1) 장애인용 수직형 2) 장애인용 경사형

자료: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재구성

-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 2) 다만 보고서 목차,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에는 본래 명칭을 사용함

또한 승강기의 구동방식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전기모터 구동으로 운반구 (CAR)를 이동시키는 전기식과 실린더 내부에 장착된 유체 구동으로 운반구를 이동시키는 유압식으로 구분되는데, 전기식이 절대 다수(99.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승강기 구동방식에 의한 구분



자료: 행안부 제출자료

나. 승강기 설치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등으로 공동주택 및 고층 건물의 건립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설치대수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표 2]와 같이 승강기 보유대수는 2010년 424,201대에서 매년 약 2만~4만 대씩 증가하여 2019년 12월 말 현재 716,340대(보유대수 세계 8위 수준)로 68.9% 증가하였다.

[표 2] 승강기 보유대수 현황

(단위: 대)

구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대수	424,201	496,450	598,489	716,340

자료: 행안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승강기의 용도별 보유현황을 보면 [표 3]과 같이 승객용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총 453,593대(63.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승강기 용도별 보유대수 현황

(단위: 대)

합계	승객용	침대용	승객 화물용	소방 구조용	피난용	장애인용	전망용	주택용	화물용	소형 화물용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휠체어 리프트
716,340	268,005	6,283	12,187	154,855	161	185,588	6,360	371	24,278	7,796	11,456	29,302	5,822	3,876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다.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승강기 설치대수 증가와 함께 [표 4]와 같이 승강기 이용자의 과실 및 관리주체·유지관리업체의 과실 등으로 승강기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표 4]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단위: 대, 건, %)

연도	승강기 보유대수	사고건수	사고발생률
2010년	424,201	129	0.0304
2013년	496,450	88	0.0177
2016년	598,489	44	0.0074
2019년	716,340	72	0.01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승강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64건을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이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과실 등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132건으로 전체 사고의 80.5%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승강기 안전사고 원인별 분류

(단위: 건, %)

유형	사고원인	건수	비율
인적요인	이용자 과실	79	48.2
	관리주체 과실	10	6.1
	유지관리업체 과실	43	26.2
	소계	132	80.5
기계적 요인	제조업체 과실	3	1.8
기타	자연재해 등 기타	29	17.7
합계	-	164	100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라. 승강기 안전관리 현황

승강기 안전사고의 47%(최근 5년간)가량은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이며, 대부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뛰어들거나(끼임 부상) 및 에스컬레이터의 발판 노란선 밖에 서 있는 경우이다.

이에 행안부에서 이용자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엘리베이터에는 자동문닫힘 감지센서를, 에스컬레이터에는 비상정지버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이용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해 홍보 매체(TV, 신문, 라디오 등)를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엘리베이터 내부,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에서 안전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유관기관(경남○○교육원, ○○안전체험관 등)과 협업하여 승강기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하여 승강기 안전 관련 체험형 교구 및 교재를 제공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기계식주차장 일반 현황

가. 기계식주차장의 개념

기계식주차장치는 「주차장법」 제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³⁾ 및 부설주차장⁴⁾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하고, 기계식주차장은 이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의미한다.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형태에 따라 [사진 1]과 같이 건물내장형, 독립철탑형, 외부노출형 등으로 구분된다.

[사진 1] 기계식주차장 설치형태에 따른 구분

건물내장형	독립철탑형	외부노출형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치는 작동원리에 따라 [사진 2]와 같이 수직 또는 수평순환식, 2단식, 승강기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4)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사진 2] 기계식주차장치 종류

주차장치명	수직순환식	2단식	승강기식
장치 모습			
작동 원리	주차구획 ^주 에 차량을 싣고 수직으로 순환이동	주차구획을 2단으로 배치하여 상하 또는 수평이동	주차구획을 여러 층으로 배치하고, 차량을 실은 승강기가 승강로를 따라 이동

주: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주차단위구획) 전체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나.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

2000년대 이후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였고,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지에는 일정 공간에 가급적 많은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표 6]과 같이 40,882기(27,955개소)로 766,22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특별시에 15,963기(262,701면), 부산광역시에 6,625기(141,216면) 등 2개 광역자치단체에 전체 설치 기수의 55.3%인 22,588기가 설치되어 있다.

[표 6] 기계식주차장 지역별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기, 면)

구분	개소		기수		주차면수	
	개소	비율	기수	비율	면수	비율
서울	10,963	39.2	15,963	39.1	262,701	34.3
부산	4,586	16.4	6,625	16.2	141,216	18.4
대구	1,348	4.8	2,695	6.6	44,423	5.8
인천	2,008	7.2	2,364	5.8	60,470	7.9
광주	658	2.4	1,014	2.5	20,906	2.7
대전	1,017	3.6	1,709	4.2	24,223	3.2
울산	538	1.9	692	1.7	16,489	2.1
강원	318	1.1	469	1.1	8,338	1.1
경기	3,242	11.6	4,616	11.3	98,650	12.9
세종	3	0.0	4	0.0	69	0.0
충북	272	1.0	458	1.1	9,092	1.2
충남	529	1.9	662	1.6	8,995	1.2
전북	188	0.7	294	0.7	3,059	0.4
전남	303	1.1	414	1.0	7,354	0.9
경북	472	1.7	736	1.8	12,000	1.6
경남	1,146	4.1	1,634	4.0	34,525	4.5
제주	364	1.3	533	1.3	13,710	1.8
합계	27,955	100.0	40,882	100.0	766,220	100.0

자료: 국토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7]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중 2단식이 전체 설치기수의 34% (13,878기)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주차면수는 전체의 8% 수준(63,605면)이다.

반면, 단위면적당 주차효율이 높은 승강기식의 경우 9,138기로 전체 설치기수의 22%를 차지하나 주차면수는 352,263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기, 면)

구분	기수	면수
수직순환식	3,316	46,752
수평순환식	261	5,674
다층순환식	7,119	126,952
2단식	13,878(34%)	63,605(8%)
다단식	4,278	37,921
승강기식	9,138(22%)	352,263(46%)
승강기슬라이드식	223	14,713
평면왕복식	2,661	118,237
특수방식	8	103
합 계	40,882(100%)	766,220(100%)

자료: 국토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현황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증가와 함께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기계식주차장을 보수하는 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기계식주차장의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해 이용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안전사고가 [표 8]과 같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표 8]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1995~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19	계
건수	12	12	17	27	57	125
사망	3	7	12	16	19	57
부상	5	3	6	9	13	36

자료: 국토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72건을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표 9]와 같이 이용자 또는 보수자의 과실 등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46건(63.8%)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식주차장이 가장 많이 설치된 서울특별시(30건)와 부산광역시(21건)에서 51건(71%)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표 9]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원인별 분류

(단위: 건, %)

유형	사고원인	건수	비율
인적요인	이용자 과실	19	26.4
	보수자 과실	14	19.4
	관리자 과실	13	18.1
	소계	46	63.9
기계적 요인	기계적 결함	20	27.8
기타	기타	6	8.3
합계	-	72	100

자료: 국토부 제출자료 재구성

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현황

행안부는 승강기 관련 소관 법령인 승강기법 제·개정 등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승강기법 제7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조사대상 항목으로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등 매년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 소관 법령인 「주차장법」 제·개정 및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주차장법」에는 국토부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 등의 운영상황 등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검사 불합격 후 불법운영 여부 등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Ⅲ. 감사결과

1 |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구분	합계	주의	통보		
			일반	시정완료	모범사례
합계	40	7	31	1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검사 분야

- ① **(자체점검 부실)** 유지관리업체에서 일부 승강기를 자체점검에서 누락하거나 점검항목 중 일부만 점검하고도 승강기정보망에 '정상 점검'으로 입력하는 사례 빈번
- ② **(검사합격증명서 미흡)** 승강기 안전검사 합격 시 발급하는 검사합격증명서에 검사 유효기간이 미포함되어 유효기간 경과를 쉽게 알 수 없는 등 안전관리 소홀 우려
- ③ **(조건부합격 사후관리 미흡)** 승강기 조건부합격 확인검사지침에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현장확인 실시 조항을 두지 않아 조건이행 확인 없이 합격 처리

(나) 운행 및 유지관리 분야

- ① **(기계식주차장 불법운영 실태조사 미실시)** 안전검사 미수검·불합격 기계식주차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실태조사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
- ② **(중량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주차 제한방안 미마련)** 기계식주차장을 중형·대형으로만 구분한 채 중량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주차행위 제한방안 미마련
- ③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로 안전관리 부실 우려

(다) 사고조사 및 안전기준 분야

- ① **(부품 추락사고 안전관리 미흡)** 승강기 주요 부품 절단·탈락으로 인한 추락을 중대한 고장 등의 범위에 포함, 사고원인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② **(제어반 에러코드 임의삭제 방지방안 미비)** 유지관리업체에서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제어반에 기록·저장된 고장발생 이력정보(에러코드)를 임의삭제하여 고장발생 원인 파악 등 안전관리 조치 곤란
- ③ **(용접부 추락 방지대책 미흡)** 균형추 하부에 접합되는 금속판이 용접으로 접합된 승강기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용접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균형체인 등 추락사고 우려

이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6개 공공기관장에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가 자체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점검 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행안부장관에게 승강기 안전검사 합격 시 발급하는 검사합격증명서에 검사 유효기간을 포함하도록 개선요구하는 등 조치 기관에 총 40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 등을 하였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승강기 자체점검 대행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철도공사 등 [별표 1] 기재 5개 기관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는 승강기법 제31조 제1항 등¹⁾에 따라 소관 승강기 579대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경부선 서울역 등 49개소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에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 [별표 1] 기재 6개 기관²⁾(이하 “6개 기관”이라 한다)은 소관 승강기 자체점검을 [표 13]과 같이 유지관리계약을 맺은 6개 유지관리업체에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표 13] 승강기 자체점검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약 현황

(단위: 대)

1) 승강기법 제3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2)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예술의전당, 한국수출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명	계약명(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상대자(소재지)
①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경부선 서울역 등 49개소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 (2018. 3. 1.~2020. 12. 31., 4,513백만 원)	579	㈜○○ (서울특별시 서초구)
② 서울교통공사	1~4호선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용역 (2020. 1. 1.~2021. 12. 31., 3,275백만 원)	409	○○(주) (울산광역시 중구)
③ 서울대학교병원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용역(어린이병원 등) (2018. 2. 1.~2020. 3. 31., 557백만 원)	48	◇◇(유) (서울특별시 중구)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용역(본관 등) (2018. 2. 1.~2020. 3. 31., 154백만 원)	17	◆◆(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④ 예술의전당	2019년도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2019. 4. 1.~2020. 3. 31., 98백만 원)	39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⑤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승강기 관리용역 (2020. 1. 1.~2020. 12. 31., 19백만 원)	13	■(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⑥ 인천국제공항공사	T1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5기) (2017. 6. 1.~2020. 5. 31., 17,949백만 원)	3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합계	1,418	

자료: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승강기법 제3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업체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안부고시 제2019-30호, 이하 “승강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유지관리업체는 자체 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매일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승강기관리규정 [별표 3] “자체점검기준”에 따르면 자체점검 시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의 기능 및 작동 상태” 등 84개 항목³⁾은 매일 점검한 후

3) 엘리베이터의 경우 1회/1월: 84개, 1회/3월: 83개, 1회/6월: 16개이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경우 1회/1월: 42개, 1회/3월: 18개, 1회/6월: 8개임

그 결과를 양호, 주의 관찰,⁴⁾ 긴급 수리로 구분하여 승강기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승강기법 제54조, 제78조 제1항 및 제82조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및 “승강기 자체점검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회신”(2018. 1. 3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764) 등에 따르면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⁵⁾ 안전관리기술자에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2014. 6. 9., 한국철도공사 세칙 제72호) 제24조 등에 따라 유지관리업체로부터 자체점검일자 및 인원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자체점검 시작 전에 제출받는 등 6개 기관은 6개 유지관리업체로부터 자체점검 작업계획을 사전에 통보받고 있다.

따라서 유지관리업체는 자체점검 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 전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승강기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 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사실대로 승강기정보망에 입력하는지 확인하는 등 자체점검 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원 감사기간(2020. 1. 14.~2. 14.) 중 주요 공공시설로서 이용자가 많은

4)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부적합 내용이 승강기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직접 점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체가 점검을 이행하도록 관리·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음(대행자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관례: 대법원 2005. 2. 17. 2004마1003 결정)

경부선 서울역, 인천국제공항 등에 있는 승강기 266대를 현장점검 하였다.

그 결과, 주식회사 ○○가 2020. 1. 7. 점검인원 4명으로 경부선 서울역에 있는 승객용 승강기 6대를 자체점검하는 것으로 같은 날 제출한 작업계획서와 달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고서도 승강기정보망에는 작업계획서대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 입력(당일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 업체는 2020. 1. 20. 감사원 현장점검 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후인 같은 해 1. 21. 자체점검을 하면서 승강기 6대 중 5대에 대해 매월 점검하여야 하는 84개 항목 중 53~59개 항목을 점검하지 않았고, 같은 날 승강기정보망에는 53~59개 항목 점검결과를 모두 ‘양호’로 거짓 입력한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는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는지, 점검결과를 사실대로 승강기정보망에 입력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 6개 유지관리업체는 6개 기관 소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을 대행하면서 [별표 1] “승강기 자체점검 부실 현황”과 같이 총 104대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하였으며, 해당 승강기의 관리주체인 6개 기관은 승강기 자체점검 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승강기 자체점검 부실 사례^주

- ▶ (자체점검 미 실시 및 거짓 입력)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거짓 입력(13건)
- ▶ (자체점검 일부항목 미 실시 및 거짓 입력) 자체점검 시 일부 항목을 점검하지 않고도 전부 점검한 것으로 거짓 입력(65건)
- ▶ (자체점검 일자 거짓 입력) 실제 점검일이 아닌 날을 점검일자로 거짓 입력(22건)
- ▶ (자체점검 결과 “주의·관찰”을 “양호”로 거짓 입력) 점검결과 부적합(주의·관찰)한 것으로 판정하고도 적합(양호)한 것처럼 거짓 입력(14건)
- ▶ (자체점검 점검자 거짓 입력) 실제 점검자가 아닌 사람을 점검자인 것처럼 거짓 입력(3건)

주: 위 사례 중 일부 승강기는 여러 유형에 중복 해당

자료: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승강기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등 6개 기관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등 6개 기관은 앞으로 유지관리업체가 승강기법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부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는 자체점검 결과 거짓 입력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승강기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는 [별표 1] “승강기 자체점검 부실 현황”과 같이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6개 유지관리업체 소속 안전관리기술자 26명과 해당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4조 및 제82조에 따라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승강기 자체점검 부실 현황

(단위: 대, 만 원)

연번	승강기ID	종류	현장점검 중 확인 결과 ^{주)}						
			승강기정보망 상 입력정보			확인 결과	해당 유형	과태료 대상 (해당함: O, 해당없음: X)	
			점검일시	점검항목수	점검자			입력일	미실시
<p>총 1,418(조사 266,제외 1,152) 부실 자체점검 총계: 104 (유형 A) 자체점검 미실시 및 허위 입력: 13 (유형 B) 자체점검 일부항목 미실시 및 허위 입력: 65(유형 A 중복 8 포함) (유형 C) 자체점검 일자 허위 입력: 22 (유형 D) 자체점검 결과 “주의·관찰”을 “양호”로 허위 입력: 14(유형 B 중복 2 포함) (유형 E) 자체점검자 허위 입력: 3(유형 A, B 중복 3 포함)</p>									
<p>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〇〇, 총 579(조사 13, 제외 566) 부실 자체점검 소계: 13 (유형 A) 자체점검 미실시 및 허위 입력+(유형 B) 자체점검 일부항목 미실시 및 허위 입력+(유형 E) 자체점검자 허위 입력: 3 (유형 A) 자체점검 미실시 및 허위 입력+(유형 B) 자체점검 일부항목 미실시 및 허위 입력: 5 (유형 A) 자체점검 미실시 및 허위 입력: 5</p>									
1	-	EV	'20. 1. 8. 84개 항목	-	'20. 1. 10.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2. 84개 항목	-	'20. 1. 31.	59개 미점검, -/-	B, E	O	O
2	-	EV	'20. 1. 8. 84개 항목	-	'20. 1. 10.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2. 84개 항목	-	'20. 1. 31.	59개 미점검, -/-	B, E	O	O
3	-	EV	'20. 1. 8. 84개 항목	-	'20. 1. 10.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2. 84개 항목	-	'20. 1. 31.	59개 미점검, -/-	B, E	O	O
4	-	EV	'20. 1. 8. 84개 항목	-	'20. 1. 10.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2. 84개 항목	-	'20. 1. 31.	(CCTV 고장으로 확인불가)	-	-	-
5	-	EV	'20. 1. 8. 84개 항목	-	'20. 1. 10.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2. 84개 항목	-	'20. 1. 31.	(CCTV 고장으로 확인불가)	-	-	-
6	-	EV	'20. 1. 8. 84개 항목	-	'20. 1. 10.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2. 84개 항목	-	'20. 1. 31.	(CCTV 고장으로 확인불가)	-	-	-
7	-	EV	'20. 1. 8. 84개 항목	-	'20. 1. 10.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2. 84개 항목	-	'20. 1. 31.	(CCTV 고장으로 확인불가)	-	-	-
8	-	EV	'20. 1. 7. 84개 항목	-	'20. 1. 7.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1. 84개 항목	-	'20. 1. 21.	(정상 수행)	-	-	-

연번	승강기ID	종류	현장점검 중 확인 결과 ^{주)}						
			승강기정보망 상 입력정보			확인 결과	해당 유형	과태료 대상 (해당함: O, 해당없음: X)	
			점검일시	점검항목수	점검자			입력일	미실시
9	-	EV	'20. 1. 7. 84개 항목	-	'20. 1. 7.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1. 84개 항목	-	'20. 1. 21.	53개 미점검	B	O	O
10	-	EV	'20. 1. 7. 84개 항목	-	'20. 1. 7.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1. 84개 항목	-	'20. 1. 21.	59개 미점검	B	O	O
11	-	EV	'20. 1. 7. 84개 항목	-	'20. 1. 7.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1. 84개 항목	-	'20. 1. 21.	53개 미점검	B	O	O
12	-	EV	'20. 1. 7. 84개 항목	-	'20. 1. 7.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1. 84개 항목	-	'20. 1. 21.	53개 미점검	B	O	O
13	-	EV	'20. 1. 7. 84개 항목	-	'20. 1. 7.	미실시('20. 1. 20. 사실확인)	A	O	O
			'20. 1. 21. 84개 항목	-	'20. 1. 21.	53개 미점검	B	O	O
서울교통공사 ◎◎(주), 총 409(조사 23, 제외 386) 부실 자체점검 소계: 23 (유형 B) 자체점검 일부항목 미실시 및 허위 입력: 23									
14	-	EV	'20. 1. 2. 84개 항목	-	'20. 1. 30.	14개 미점검	B	O	O
15	-	EV	'20. 1. 2. 84개 항목	-	'20. 1. 30.	14개 미점검	B	O	O
16	-	EV	'20. 1. 2. 84개 항목	-	'20. 1. 30.	14개 미점검	B	O	O
17	-	EV	'20. 1. 2. 84개 항목	-	'20. 1. 30.	14개 미점검	B	O	O
18	-	EV	'20. 1. 9. 84개 항목	-	'20. 1. 30.	14개 미점검	B	O	O
19	-	EV	'20. 1. 9. 84개 항목	-	'20. 1. 30.	14개 미점검	B	O	O
20	-	EV	'20. 1. 9. 84개 항목	-	'20. 1. 30.	14개 미점검	B	O	O
21	-	EV	'20. 1. 9. 84개 항목	-	'20. 1. 30.	14개 미점검	B	O	O
22	-	EV	'20. 1. 9.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23	-	EV	'20. 1. 9.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24	-	EV	'20. 1. 10.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25	-	EV	'20. 1. 10.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26	-	EV	'20. 1. 10.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27	-	EV	'20. 1. 7.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28	-	EV	'20. 1. 7.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29	-	EV	'20. 1. 7.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연번	승강기ID	종류	현장점검 중 확인 결과 ^{주)}							
			승강기정보망 상 입력정보			확인 결과	해당 유형	과태료 대상 (해당함: O, 해당없음: X)		
			점검일시	점검항목수	점검자			입력일	미실시	거짓 입력
30	-	EV	'20. 1. 16.	84개 항목	-	'20. 1. 21.	14개 미점검	B	O	O
31	-	EV	'20. 1. 16.	84개 항목	-	'20. 1. 21.	14개 미점검	B	O	O
32	-	EV	'20. 1. 3.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33	-	EV	'20. 1. 3.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34	-	EV	'20. 1. 3.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35	-	EV	'20. 1. 6.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36	-	EV	'20. 1. 6.	84개 항목	-	'20. 1. 20.	14개 미점검	B	O	O
서울대학교병원 ◇◇(유) 및 ◆◆(주) 총 65(조사 65, 제외 0) 부실 자체점검 소계 : 31 (유형 B) 자체점검 일부항목 미실시 및 허위 입력: 17 (유형 D) 자체점검 점검결과 “주의·관찰”을 “양호”로 허위 입력: 12 (유형 B) 자체점검 일부항목 미실시 및 허위 입력+(유형 D) 자체점검 점검결과 “주의·관찰”을 “양호”로 허위 입력: 2										
◇◇(유) 총 48(조사 48, 제외 0) 부실 자체점검 소계: 26 (유형 B) 자체점검 일부항목 미실시 및 허위 입력: 12 (유형 D) 자체점검 점검결과 “주의·관찰”을 “양호”로 허위 입력: 12 (유형 B) 자체점검 일부항목 미실시 및 허위 입력+(유형 D) 자체점검 점검결과 “주의·관찰”을 “양호”로 허위 입력: 2										
37	-	EV	'19. 12. 12.	84개 항목	-	'19. 12. 13.	2개 입력 오류	D	X	O
38	-	EV	'19. 12. 12.	84개 항목	-	'19. 12. 13.	2개 입력 오류	D	X	O
39	-	EV	'19. 12. 18.	84개 항목	-	'19. 12. 19.	2개 입력 오류	D	X	O
40	-	EV	'19. 12. 18.	84개 항목	-	'19. 12. 19.	2개 입력 오류	D	X	O
41	-	EV	'19. 12. 19.	84개 항목	-	'19. 12. 20.	1개 입력 오류	D	X	O
42	-	EV	'19. 12. 19.	84개 항목	-	'19. 12. 20.	1개 입력 오류	D	X	O
43	-	EV	'19. 12. 26.	84개 항목	-	'19. 12. 26.	1개 입력 오류	D	X	O
44	-	EV	'19. 12. 26.	84개 항목	-	'19. 12. 27.	2개 입력 오류	D	X	O
45	-	EV	'19. 12. 4.	84개 항목	-	'19. 12. 4.	3개 미점검	B	O	O
46	-	EV	'19. 12. 4.	84개 항목	-	'19. 12. 4.	3개 미점검	B	O	O
47	-	EV	'19. 12. 4.	84개 항목	-	'19. 12. 4.	3개 미점검, 1개 입력 오류	B, D	O	O
48	-	EV	'19. 12. 4.	84개 항목	-	'19. 12. 4.	3개 미점검	B	O	O
49	-	EV	'19. 12. 4.	84개 항목	-	'19. 12. 4.	3개 미점검	B	O	O
50	-	EV	'19. 12. 27.	84개 항목	-	'19. 12. 27.	3개 미점검, 2개 입력 오류	B, D	O	O
51	-	EV	'19. 12. 26.	84개 항목	-	'19. 12. 26.	3개 미점검	B	O	O
52	-	EV	'19. 12. 26.	84개 항목	-	'19. 12. 26.	3개 미점검	B	O	O
53	-	EV	'19. 12. 12.	84개 항목	-	'19. 12. 12.	3개 미점검	B	O	O
54	-	EV	'19. 12. 12.	84개 항목	-	'19. 12. 12.	3개 미점검	B	O	O
55	-	EV	'19. 12. 12.	84개 항목	-	'19. 12. 12.	3개 미점검	B	O	O
56	-	EV	'19. 12. 13.	84개 항목	-	'19. 12. 14.	3개 미점검	B	O	O

연번	승강기ID	종류	현장점검 중 확인 결과 ^{주)}							
			승강기정보망 상 입력정보			확인 결과	해당 유형	과태료 대상 (해당함: O, 해당없음: X)		
			점검일시	점검항목수	점검자			입력일	미실시	거짓 입력
57	-	EV	'19. 12. 26.	84개 항목	-	'19. 12. 26.	1개 입력 오류	D	X	O
58	-	EV	'19. 12. 26.	84개 항목	-	'19. 12. 26.	1개 입력 오류	D	X	O
59	-	EV	'19. 12. 27.	84개 항목	-	'19. 12. 27.	3개 미점검	B	O	O
60	-	EV	'19. 12. 26.	84개 항목	-	'19. 12. 26.	2개 입력 오류	D	X	O
61	-	EV	'19. 12. 13.	84개 항목	-	'19. 12. 14.	3개 미점검	B	O	O
62	-	EV	'19. 12. 5.	84개 항목	-	'19. 12. 5.	1개 입력 오류	D	X	O
◆◆(주) 총 17(조사 17 제외 0) 부실 자체점검 소계: 5 (유형 B) 자체점검 일부항목 미실시 및 허위 입력: 5										
63	-	EV	'19. 12. 28.	84개 항목	-	'20. 1. 3.	20개 미점검	B	O	O
64	-	EV	'19. 12. 28.	84개 항목	-	'20. 1. 3.	20개 미점검	B	O	O
65	-	EV	'19. 12. 28.	84개 항목	-	'20. 1. 3.	20개 미점검	B	O	O
66	-	EV	'19. 12. 28.	84개 항목	-	'20. 1. 3.	20개 미점검	B	O	O
67	-	EV	'19. 12. 28.	84개 항목	-	'20. 1. 3.	20개 미점검	B	O	O
예술의전당 □□(주), 총 39(조사 13, 제외 26) 부실 자체점검 소계: 13 (유형 B) 자체점검 일부항목 미실시 및 허위 입력: 13										
68	-	EV	'19. 12. 11.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69	-	EV	'19. 12. 11.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70	-	EV	'19. 12. 11.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71	-	EV	'19. 12. 11.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72	-	EV	'19. 12. 12.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73	-	EV	'19. 12. 12.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74	-	EV	'19. 12. 12.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75	-	EV	'19. 12. 12.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76	-	EV	'19. 12. 18.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77	-	EV	'19. 12. 18.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78	-	EV	'19. 12. 4.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79	-	EV	'19. 12. 4.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80	-	EV	'19. 12. 5.	84개 항목	-	'20. 1. 9.	32개 미점검	B	O	O
한국수출입은행 ■(주), 총 13(조사 2, 제외 11) 부실 자체점검 소계: 2 (유형 B) 자체점검 일부항목 미실시 및 허위 입력: 2										
81	-	EV	'20. 1. 10.	84개 항목	-	'20. 1. 10.	24개 미점검	B	O	O
82	-	EV	'20. 1. 22.	84개 항목	-	'20. 1. 22.	24개 미점검	B	O	O
인천국제공항공사 (주)○○, 총 313(조사 150, 제외 163) 부실 자체점검 소계: 22 (유형 C) 자체점검 점검일자 허위 입력: 22										
83	-	EL	'20. 1. 28.	84개 항목	-	'20. 1. 30.	실제: '20. 1. 9.	C	X	O
84	-	EL	'20. 1. 5.	84개 항목	-	'20. 1. 30.	실제: '20. 1. 10.	C	X	O
85	-	EL	'20. 1. 6.	84개 항목	-	'20. 1. 30.	실제: '20. 1. 9.	C	X	O
86	-	EL	'20. 1. 5.	84개 항목	-	'20. 1. 30.	실제: '20. 1. 9.	C	X	O
87	-	EL	'20. 1. 15.	84개 항목	-	'20. 1. 22.	실제: '20. 1. 20.	C	X	O
88	-	EL	'20. 1. 15.	84개 항목	-	'20. 1. 22.	실제: '20. 1. 17.	C	X	O
89	-	EL	'20. 1. 12.	84개 항목	-	'20. 1. 30.	실제: '20. 1. 17.	C	X	O

연번	승강기ID	종류	현장점검 중 확인 결과 ^{주)}							
			승강기정보망 상 입력정보			확인 결과	해당 유형	과태료 대상 (해당함: O, 해당없음: X)		
			점검일시	점검항목수	점검자			입력일	미실시	거짓 입력
90	-	ES	'20. 1. 28.	42개 항목	-	'20. 1. 28.	실제: '20. 1. 8.	C	X	O
91	-	ES	'20. 1. 11.	42개 항목	-	'20. 1. 30.	실제: '20. 1. 18.	C	X	O
92	-	ES	'20. 1. 12.	42개 항목	-	'20. 1. 30.	실제: '20. 1. 23.	C	X	O
93	-	ES	'20. 1. 13.	42개 항목	-	'20. 1. 30.	실제: '20. 1. 23.	C	X	O
94	-	ES	'20. 1. 23.	42개 항목	-	'20. 1. 30.	실제: '20. 1. 24.	C	X	O
95	-	ES	'20. 1. 13.	42개 항목	-	'20. 1. 27.	실제: '20. 1. 6.	C	X	O
96	-	ES	'20. 1. 10.	42개 항목	-	'20. 1. 25.	실제: '20. 1. 14.	C	X	O
97	-	ES	'20. 1. 30.	42개 항목	-	'20. 1. 30.	실제: '20. 1. 29.	C	X	O
98	-	ES	'20. 1. 14.	42개 항목	-	'20. 1. 25.	실제: '20. 1. 18.	C	X	O
99	-	ES	'20. 1. 9.	42개 항목	-	'20. 1. 22.	실제: '20. 1. 17.	C	X	O
100	-	MW	'20. 1. 7.	42개 항목	-	'20. 1. 27.	실제: '20. 1. 22.	C	X	O
101	-	MW	'20. 1. 6.	42개 항목	-	'20. 1. 26.	실제: '20. 1. 19.	C	X	O
102	-	MW	'20. 1. 6.	42개 항목	-	'20. 1. 26.	실제: '20. 1. 22.	C	X	O
103	-	MW	'20. 1. 8.	42개 항목	-	'20. 1. 28.	실제: '20. 1. 13.	C	X	O
104	-	ES	'20. 1. 30.	42개 항목	-	'20. 1. 30.	실제: '20. 1. 29.	C	X	O

주: 1. 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CCTV 확인 또는 관련 서류 검토, 승강기 자체점검 과정에 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담당자와 자체점검 담당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것이며, 자체점검 미실시의 경우 '미실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미점검 항목을 점검한 것으로 한 경우 'n개 미점검'으로 표기함

2. 엘리베이터는 EV로, 에스컬레이터는 ES로, 무빙워크는 MW로 표기

자료: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등 6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안전관리자 미선임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내 용

1. 업무개요

서울특별시 등 [별표 6] 기재 17개 시·도는 승강기법 제78조에 따라 매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승강기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채로 운행되는 승강기에 대하여 통보받은 후 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승강기법 제29조에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 등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¹⁾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5조 등²⁾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승강기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너.에 따라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

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3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3조,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3조,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3조,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3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3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5조, 제9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3조,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3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5조,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3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3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부터 제4조

징수 사무를 위임한 시·군·구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다시 통보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승강기 명단을 통보 받은 시·군·구가 해당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징수 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등 적절하게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채로 운행되는 승강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5. 28.~6. 24.) 중 201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가 공단으로부터 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유로 통보 받은 승강기 3,539대에 대해 2020년 5월 말 현재까지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6] “안전관리자 미선임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위법상태 해소 현황”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는 통보받은 25대의 관리주체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고 219개 시·군·구는 계 3,539대 중 24대³⁾의 관리주체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도,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는 이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에 위 3,539대의 승강기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위법상태 해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어린이집 승강기의 경우 2019. 8. 1. 승강기 설치 후 10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현재까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채로 운행되는 등 [별표 6]과 같이 1,901대(53.7%)의 승강기가 안전관리자 없이 운행되고 있었다.

3) 경기도 하남시는 16대,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8대의 승강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그 결과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해 승강기를 조작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⁴⁾하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승강기 이용자의 갇힘 사고 등의 발생 시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 등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시·군·구에 통보한 후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의견(16개 시·도)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세종특별자치시)을 각각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등 [별표 6] 기재 16개 시·도지사는 소관 시·군·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통보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소관 시·군·구로 하여금 관내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승강기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직무와 관련한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승강기관리교육은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과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피난 운행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별표 6]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위법상태 해소 현황

(단위: 대, %)

연번	구분	과태료 부과 방식	통보	과태료 부과 대수	위법상태 미해소 (미해소율)
합계			3,539	24	1,901(53.7)
1	서울특별시	시·군·구 위임 부과	774	8	448(57.9)
2	부산광역시	"	180	-	99(55.0)
3	대구광역시	"	91	-	45(49.5)
4	인천광역시	"	194	-	119(61.3)
5	광주광역시	"	86	-	37(43.0)
6	대전광역시	"	120	-	78(65.0)
7	울산광역시	"	55	-	23(41.8)
8	세종특별자치시	직접 부과	25	-	12(48.0)
9	경기도	시·군·구 위임 부과	1,191	16	600(50.4)
10	강원도	"	84	-	51(60.7)
11	충청북도	"	113	-	51(45.1)
12	충청남도	"	133	-	89(66.9)
13	전라북도	"	97	-	39(40.2)
14	전라남도	"	95	-	50(52.6)
15	경상북도	"	91	-	48(52.7)
16	경상남도	"	90	-	33(36.7)
17	제주특별자치도	"	120	-	79(65.8)

주: 2019년 10~12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도에 통보한 승강기를 대상으로 2020. 5. 30. 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
 자료: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료 재구성